



# 미국의 21세기 전략계획과 미국 수수료 개정 논란



주임연구원 일근영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I. 머리말

2002년 6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1세기 시장 위주 지식재산권제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심사의 질적 향상, 신속한 심사 처리, 고객 만족의 기관으로 거듭남을 목표로 한 야심찬 “21세기 전략계획(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계획은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법안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미국 내에서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의 지재권 관련 이익단체들은 21세기 전략계획의 성취 목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계획의 일부 세부 사항 특히,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 속에 포함된 수수료 개정안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본 글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수수료 인상에 관한 앞으로의 운명을 전망하고 있다.

## II. 미국 수수료 개정안

### 1. 수수료 개정 배경 – 21세기 전략계획

현재 USPTO에서는 400,000건의 특허출원 심사가 적체되어 있고, 특히 출원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pendency : 특허 출원부터 특허 등록 까지 걸리는 시간)도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는 10년 이내에 심사적체기간이 3~4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즉각적이고 합의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몇몇 중요한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동 기간이 6년으로까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마저 미국 내에서는 돌고 있다.<sup>1)</sup> 즉, 4~6년만에 특허가 등록된다면, 이는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원 자체가 점차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특허 질에 대한 우려도 드러나고 있다. 특허 및 상표 등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법원에 가서 무효로 판명될 가능성이 큰 특허와 상표가 등록되면, 이로 인해 보호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 하려는 권리자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실 권리로 인하여 그러

1) Jenna Greene, "Changes at the PTO", Legal Times, 2002년 11월 7일.

한 권리자의 경쟁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미국 내 지재권 관련 이익 단체는 “위기에 빠진 USPTO”<sup>2)</sup>라는 강한 어조까지 써가며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에 대한 미국 내의 격해진 의견과 더불어,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도 2002년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USPTO 운영의 주요 요소-업무량 관리, 특허의 질적 심사, 특허 및 상표 심사처리 기간, 심사관 인원에서의 적체 및 생산성 향상의 실패, 심사관 교육 개선 필요, 전자정부(e-Government)에 투자 필요 등-에 대한 USPTO의 과거 실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sup>3)</sup>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5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라는 미 의회의 지시에 따라, Rogan 특허상표청장은 새로운 전략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내 모든 부서에서 고위급 관료들로 구성된 업무추진팀을 창설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21세기 전략계획이다.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의 주요 목표는 (1) 특허 및 상표 심사질을 향상시키고, (2) 21세기 경제에 맞는 업무량을 다루기 위한 전자정부(e-Government)를 의욕적으로 이행시키며, (3) 특허 및 상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전략을 이행하는 필요한 예산 및 법률 변경을 전제로, ① 2003년 심사 질 보장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특허 및 상표 심사의 질을 향상하

고, ② 특허 출원서 제출 후 최초 답변서(first action) 발송까지의 평균 시간을 2008년까지 5.8 개월로 단축하며, ③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심사 처리기간을 2008년까지 18개월로 목표 달성을 유지하며, ④ 상표는 2003년 10월 1일, 특허는 2004년 10월까지 전자정부(e-Government)를 이행함으로써 출원의 처리기간을 가속화하고, ⑤ 매년 950명의 특허 심사관을 충원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250명 선으로 줄이고 따라서 2008년까지 당초 계획 보다 2500명을 감축하며, ⑥ 소스 분류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⑦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청간 업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쌍무간 및 다자간 회의를 확대하는 것<sup>4)</sup>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 수수료 개정안 내용

미국의 21세기 전략계획 하에 제안된 특허 및 상표 수수료 개정안의 정식 법안명은 “USPTO Re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03” (§35 USC 41)으로 보통 미 의회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에서 관掌하는 USPTO의 일반 예산안과는 다른 별도의 법안으로 법사 위원회(Judiciary Committee) 관할 하에 놓여져 있다.<sup>5)</sup>

동 법안은 10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했었지만, 모두에서 밝혔듯이 미국 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미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2) 미국지식재산권법학회(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생명공학산업기구(BIO :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자협회(IPO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그리고 국제상표권협회(INTA :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가 연방 기획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보낸 서신(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 2002년 10월 24일. ([www.ipo.org/2002/IPIssues/Strategic\\_Plan\\_Letter.htm](http://www.ipo.org/2002/IPIssues/Strategic_Plan_Letter.htm))

3) USPTO, “전략계획에 대한 질문응답(Answers to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Strategic Plan)”, ([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fag.htm](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fag.htm))

4) USPTO,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2002년 6월 3일. ([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21stCSP\\_E0.pdf](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21stCSP_E0.pdf))

5)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Daily News 2002”, 2002년 7월 17일. ([www.ipo.org/2002/DailyNewsChron2002.htm](http://www.ipo.org/2002/DailyNewsChron2002.htm))

로서는 인상 계획전의 수수료가 시행되고 있다.

### (1) 심사청구제도의 도입

21세기 전략계획의 수수료 인상안으로 USPTO는 15억2천7백만 달러 (\$ 1,527 million) - 이 중 특허 수수료에서는 13억5천8백만 달러 (\$ 1,358 million), 상표 수수료에 있어서는 1억6천9백만 달러 (\$ 169 million)-를 거둬들일 계획이었다. 즉, USPTO가 제안한 수수료 개정안은 특허 출원 수수료를 2배 이상 (최고 70%)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로서 출원인들은 특허 출원 1건에 대해서 74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새로운 수수료 체계 계획에 따르면, 출원인은 300달러의 출원료와 1,250달러의 별도의 심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현재 출원 및 심사 비용보다 810달러나 많은 것으로, USPTO가 유럽 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사청구”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것이다.<sup>6)</sup>

동 제도하에서,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출원인에게 자신들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가치를 평가할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며, 동 시점에서 심사료를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제공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USPTO는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큰 잠재력을 지닌 출원을 심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사에 대한 별개의 청구(그리고 별개의 심사료 지불)를 함으로써 전체 출원 중에서 심사 전 단계에서의 중도포기(dropout) 비

율이 10% 정도 될 것으로 USPTO는 예상하고 있으며,<sup>7)</sup> 이는 출원인이 심사를 연기하기로 선택했다가 심사 전에 출원을 취소하게 되기 때문에 PTO 심사관들이 매년 수 천 건의 출원을 심사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징벌적 수수료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은 또한 특허 권리 청구범위가 많은 출원에 대한 출원료를 상당히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20개항이 넘을 때 각 항마다 18달러(개인 및 중소기업은 9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PTO의 새로운 수수료 계획은 청구범위가 20개 항 초과시 각 항 당 80달러, 35항 초과시 각 항 당 640달러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때, 40항 이상의 청구범위를 가진 출원에 대한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징벌적 수수료(punitive fees)라고 한다. 즉, 이는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적(punitive)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sup>8)</sup> 출원인이 1개의 큰 출원을 20개 항 이하의 작은 출원으로 나누는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특허청의 질 높은 그리고 시의 적절한 특허를 제공하려는 특허청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자제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USPTO의 새로운 수수료 체계 계획에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 심사관들의 업무의 많은 부분인 선행기술의 조사를 아웃소싱하려는 계획이다. 즉, PTO가 선행 기술 혹은 발명의 신규성을 증명 혹은 부인할 수 있는 문헌의 조사를

6) USPTO, ‘전략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전자 사이트.

7) USPTO, 상세 사이트.

8) Jenna Greene, 전자 기사.

사적 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이는 심사관의 업무량을 줄이고, 출원된 발명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의 청구범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이다.

비록 특허 출원인들이 사적조사기관을 직접 이용하거나 혹은 PTO를 통해서 사적조사기관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선행기술 조사에 대한 입법안을 기초로 사적조사

기관에 대한 사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sup>9)</sup> PTO는 또한 가능하다면, 자격 있는 외국 특허청이 수행한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 제출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의존할 계획이다. 제안된 조치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할인해 줄 것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sup>10)</sup> 다시 말하면, 미국 수수료 개정안은

〈표 1〉 미국 특허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전후 비교<sup>11)</sup>

(단위 : 달러)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본 요 금	특허출원료	740	300
	심사료	-	1,250
	다항 종속형이 있는 경우	280	280
	특허료	1,280	1,660
	제1회(3년 6개월) 유지료	880	900
	제2회(7년 6개월) 유지료	2,020	3,000
	제3회(11년 6개월) 유지료	3,100	5,000
부 가 요 금	독립항이 3개 이상인 경우	각 항당 78	제4항 : 160 제5항 : 320 제6항 : 640 6항 이상의 경우, 각 항당 직전 수수료의 125% 부과
	총 청구항이 20개 이상인 경우	각 항당 18	21항-25항 : 80 26항-30항 : 160 31항-35항 : 320 36항-40항 : 640 40항 이상의 경우 5항 단위로 직전 수수료의 125% 부과
	특허권의 일부포기(\$253)	-	110
	기존 출원의 구체적인 인용례를 포함하거나 수정한 경우 (크로스 래퍼런스)	-	3건 : 1,000 4건 : 2,000 5건 : 4,000 6건 이상의 경우, 5건 단위로 8,000씩 부과
	기존 출원 혹은 특허의 청구항과 특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청구항을 포함하거나 수정한 경우	-	1건 : 10,680 2건 : 13,350 3건 : 16,690 4건 이상 경우, 각 건당 1건에 대한 추가요금의 125% 부과
심 판	심판청구	320	520
	심판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320	1,730
	구두심리청구	280	460

9) Brenda Sandburg, "Creativity Comes With Higher Price Tag", The Recorder, 2002년 7월 3일.

10) Brenda Sandburg, 상기 기사.

11) USPTO, "Proposed Fee Legislation", ([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21stCSP\\_4\\_Legislation.pdf](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21stCSP_4_Legislation.pdf)), 그리고 IPO, "Draft PTO Fee Bill", (2002년 7월 30일), ([www.ipo.org/2002/IPIssues/fee\\_summary.pdf](http://www.ipo.org/2002/IPIssues/fee_summary.pdf))을 참고로 저자가 재구성.

현 수수료 체계와 비교하여 특허행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요금을 증액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출원된 발명과 거의 동일한 발명이 기존문헌에서 발견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은,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다.

### 3.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반응

2002년 6월 4일 USPTO가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포함한 21세기 전략계획 발표하자마자 미국 내 모든 지재권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수수료 개정 입법안을 관광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내의 법원, 인터넷 및 지재권 소위원회(Courts, The Internet, & Intellectual Property Subcommittee)는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2년 7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 : 수수료 조정 및 기관 개혁”에 관한 공청회<sup>12)</sup>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는 정관계 뿐만 아니라, 지재권 관련 모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혹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USPTO의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미국내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한 모든 사적분야 관계자들은 USPTO의 특허상표 수수료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그 이후에도 미국 내 지재권 관련 이익 단체들은 여

러 경로를 통해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예로서, 2002년 10월 24일, 미국지식재산권법학회(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생명공학산업기구(BIO :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자협회(IPO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그리고 국제상표권협회(INTA :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이상 4개의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회들은 연방 기획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보냈다.<sup>13)</sup> 동 성명서에서 협회들은 전략계획 중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요소와 반대하는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다시 한번 행정부의 수수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단, 수수료 수입이 전용되지 않는다면, 전략계획 중 자신들이 지지하는 요소들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지함을 표명하였다.

#### (1) 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출원인으로 하여금 심사 시작 시기를 최고 18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출원을 중도에 포기하여, USPTO에서 필요없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희망에서 제안되었지만, 미국 내 지재권 관련 이익단체들은 그러한 심사의 연기가 결과적으로 아

12) Oversight hearing on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ee Schedule Adjustment and Agency Reform.” - July 18, 2002 ([www.house.gov/judiciary/courts.htm](http://www.house.gov/judiciary/courts.htm))

발표자 :

James Rogan 미 특허상표청장 (Under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Kathryn Barrett Park, 국제상표협회 부회장, (Executive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Michael K. Kirk,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 이사 (Executive Director),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Charles P. Baker, 미국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의장 (Chair),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13) AIPLA, BIO, IPO, INTA의 전개 성명서.

무런 조사보고서도 없이 출원의 공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출원이 궁극적으로 특허로 등록될 것인가 그리고 그 권리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담을 대중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연된 심사제도가 특허출원인에게 상업적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을 줄지는 모르지만, 일반국민이 출원중인 발명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특허제도의 목적인 특허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IP 단체들은 USPTO가 제안한 18개월의 심사청구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 (2) 징벌적 수수료

IP 단체들은 기존 출원 혹은 특허의 청구항과 특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뿐만 아니라 계속 출원, 일부 계속 출원, 분할 출원에 대한 초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발명을 완전히 보호하려는 출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USPTO가 방지하려고 하는 남용적 관행을 정당하게 다루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제안된 징벌적 제도하에서는 수천 달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출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 PTO 청장이자 현재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의 이사인 Michael Kirk 이사는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몇몇 산업에 있어서는, 장문의 출원이 필요불가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BIO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 생명공학산업협회)는 수천은 아니지만, 수백 면의 핵산 혹은 아미노산

서열을 묘사해야만 하는 특허 출원을 해야만 할 때가 종종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사한 경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원에서도 발생하는데, 발명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한다면, 복수의 청구항이 진정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4)</sup>

## (3)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는 심사관 노조로부터 나오고 있다. 특허심사관들의 조합인 POPA(The Patent Office Professional Association)는 조사과정과 심사과정의 분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POPA는 선행기술조사업무는 심사기능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다.<sup>15)</sup> 다시 말하면, 심사관들은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고, 외부의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비능률을 증가시키고, 질의 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TO가 내부 직원들의 질에 대해서 통제를 못한다면, 외부 조사기관들에 대한 질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아웃소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sup>16)</sup>

또한 21세기 전략계획에서는 미국 심사 과정에서 외국 특허청의 실질 심사 결과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즉, 외국 특허청의 실질 심사 결과에 거의 완전한 신뢰 및 신용을 부여하는 계획이다. 이에, IP 단체들은 주요 특허청들이 각각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사용하여 “업무 공유”를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동의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의 특허법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의존을 허용하기에는 좀 이르다

14) Jenna Greene, 전계 기사.

15) “New Director Shaking Things Up at the USPTO”, Connecticut Law Tribune, 2002년 9월 3일.

16) Jenna Greene, 전계 기사.

고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POPA는 외국에서 실시한 조사가 미국에서의 조사만큼이나 잘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회(ABA : American Bar Associ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는 특허요건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결과는 미국의 특허요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OPA와 ABA는 유럽특허청이 원칙적으로 조사기능과 심사기능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두 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7)</sup>

한편, 출원인으로 하여금 사적공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최초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USPTO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에 있어서, IP 단체들은 USPTO 가 사적 조사기관이 제출한 조사 결과의 적절성과 범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sup>18)</sup>하는 좀 더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 (4) 수수료 수입의 전용

특허 및 상표 수수료 수입 초과분의 전용은 출원인과 미국 특허상표제도 이용자들에게 지대한 염려의 대상이었다. 1990년에, USPTO의 재정을 완전히 수수료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연방 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1990년 종합 예산 재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에 의하여 특허 수수료에 초과분이 부과되었다. 초과 액수는 업무량 처리와 USPTO 의 다른 필수 비용만을 지불하는 수준에서 결정

되었다. 현재 행정부의 정책은 동 회계연도에 거둬들인 모든 특허 및 상표 수수료 중에서 모든 액수를 USPTO에 대한 예산액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3년에는 약 1억6천2백만달러 (\$162 million) 가 USPTO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부처로 전용될 계획이다.<sup>19)</sup>

이에 IP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USPTO가 거둔 사용자 수수료가 다른 특허상표 행정과 관련 없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것에 강한 불만과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여 왔다. “수수료 인상이 심사의 질적 향상, 심사기간 단축, 전자출원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허 상표 출원인으로부터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AIPLA의 Kirk 이사는 주장하고 있다.<sup>20)</sup> 다시 말하면, IP 단체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가 효과적으로 전용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조건으로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에 지지를 보낼 것이며, 따라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한 전략계획에서 그 어떠한 수수료 증가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4. 향후전망

2002년 7월 18일에 하원 법사위원회 IP 소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모든 사적분야 IP 단체들은 USPTO의 특허상표 수수료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시기를 10 월 1일에 시작되는 새로운 2003년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법안을 얻기 위해서는

17) Connecticut Law Tribune, 전재기사.

18) AIPLA, BIO, IPO, INTA의 전재 성명서.

19) USPTO, “전략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전재 사이트.

20) Brenda Sandburg, 전재 기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이후에도 수수료 개정 입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IP 단체들의 수수료 입법 초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어나자, 2002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방 정부 회계연도 맞춰 수수료 인상을 하려고 했던 USPTO는 이러한 수수료 개정 계획에서 한 발작 물러나게 되었다. 현재 제107회(2001년~2002년) 의회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라도 동 입법 초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USPTO는 아마 내년 2월 혹은 3월쯤에 의회의 새로운 회기(제108회, 2003년~2004년)에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PLA는 좀 더 온건한 수수료 인상을 제공하고 장문 출원서에 대한 처벌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 의회 회기 때에 PTO의 수수료 인상 법안에 대항하여 대안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AIPLA의 법안은 또한 별도의 새로운 수수료 세입 관리를 창출하고, 예산안으로 책정되는 기본 세입의 퍼센티지를 제한함으로써 수수료 수입 전용을 중단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sup>21)</sup>

USPTO의 예산 전용 문제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회계연도의 예산 책정 과정에서는 동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

다. USPTO 청장은 상무부 장관 및 차관의 협조와 함께, 동 문제를 첫 번째 우선 순위로 다룰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고, 2004년 회계연도에서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22)</sup> 하지만, 현재 연방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행정부와 의회가 1년 후에라도 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 III. 맷는 말

이상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과 여기에 포함된 수수료 인상 입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미 머리 말에서 밝혔듯이,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 하의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개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초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년에 대중 앞에 다시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수수료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하는 몇몇 문제에 대한 USPTO와 IP 이익 단체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발특 2002/12



21) Jenna Greene, 전게 기사.

22) USPTO, "전략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전개 사이트.